

광산 세무서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3
(하남동)
62232

6203

25. 05. 23

수납용 QR코드



20260592

나자 발가람동

12-1 당분

42.이만형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입니다.

납부고지서 재증

반송불요

25-2000007-172846



※ 계좌 이체시 반드시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국세-납세자명 또는 상호
국세계좌: 세목(납세자명 또는 상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납부지연가산세 등 시행 안내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경과일수에 따라
매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코리아신탁(주)
이유청 귀하
06178

1/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 개정에 따라 매일 납부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적납세의무자 납 부 고 지 서

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의2) 에 따라 주된 납세자의
물적납세의무자 입니다.

주된 납세자	상호 (성명) 주식회사 빛가람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44-81-01568
사업장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50 (쌍암동, 센트럴파크)	
구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1) 과세표준은	22,808,112,100	544,414,971
(2) 세율	3.00 %	20.00 %
(3) 산출세액은	544,414,971	108,882,994
(4) 여기에 가산세		원을 더하고
(5)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원을 빼면
(6) 납기내 고지세액은	544,414,970	108,882,990
(7) 납기후 부과된 가산세	31,423,460	6,284,180
(8) 기납부·경정한 금액 등		원을 더하고
(9) 지정일 현재 납부할 금액은	575,838,430	115,167,170
원입니다.		
위국세는(2024년)구속(종합부동산세)로서 ()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에게 부과되었으나, (2025-05-20) 현재 가산세(금) 포함 (691,005,600) 원이 납부되지 않아, (물적납세의무자)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100 %)인 (691,005,600) 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062) 236-7555 체납추적과 이정화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0일 광산 세 무 서 장 (인)		

가산세 산출근거 및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금액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 율	세 액
납부지연(납기후)	미납국세	3%	19,598,920
납부지연(납기후)	미납국세	미납일*0.022%	18,108,720
계			37,707,640
지정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544,414,970
물적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		108,882,990
지정금액	납부지연가산세		37,707,640
	지정금액		691,005,600
납 부 기 한 2025년 06월 09일			
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 부 고 지 서 겸 영 수 증 (납 세 자 용)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2025.05.21	691,149,320	2025.06.01	692,730,240
2025.05.22	691,293,040	2025.06.02	692,873,960
2025.05.23	691,436,760	2025.06.03	693,017,680
2025.05.24	691,580,480	2025.06.04	693,161,400
2025.05.25	691,724,200	2025.06.05	693,305,120
2025.05.26	691,867,920	2025.06.06	693,448,840
2025.05.27	692,011,640	2025.06.07	693,592,560
2025.05.28	692,155,360	2025.06.08	693,736,280
2025.05.29	692,299,080	2025.06.09	693,880,000
2025.05.30	692,442,800	2025.06.10	694,023,720
2025.05.31	692,586,520	2025.06.11	694,167,440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 부 호	분류기호	부과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24 11	5	57	78207901	
상 호 명	코리아신탁(주)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02731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5-86-52007	회계연도 2024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 관 조세	
사업장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납 부 할 금 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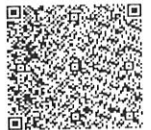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우체국
행 등

(수납인)

납 부 서(수납기관용)



납 부 호	분류기호	부과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0126	24 11	5	57	78207901	
상 호 명	코리아신탁(주)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02731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5-86-52007	회계연도 2024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 관 조세	
납 부 할 금 액	좌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우체국
행 등

(수납인)

1. 납부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금액 5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무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납세자권익24>납세자권익보호 소개>납세자권리구제 제도>불복] 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 ※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동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